

해외경쟁정책동향

본 협회 조사부

미국

9개 주, MS에게 소스코드를 공개토록 요구

개인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주들의 검찰총장들은 2001년 12월 7일 MS사에게 자사의 Internet browser 소스코드를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핵심 응용프로그램들이 경쟁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에서도 작동 될 수 있도록 해 줄것을 요구했다.

MS에 대한 독점금지 소송에서 연방 법무부가 나머지 9개 주의 합의안을 거부하고, 별도로 제출된 합의 권고안은 한달 전 MS와 연방법무부, 그리고 몇몇 주들 사이에서 체결된 합의안의 수준을 훨씬 넘어 선 것이다. 소송을 통해 더 강력한 방법을 찾기로 결정한 9개 주와 콜럼비아 특별지구는 연방차원에서 제출된 합의안이 별다른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MS에게 수없이 많은 탈법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일 이러한 제한책이 연방법무부와 몇 개의 주가 제출한 합의안을 제치고 채택된다면, MS의 시장지배력은 감소 될 수 있을 것이고 그의 경쟁자들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합의안을 제출한 주들은 MS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 중에서 핵심 부분 즉, MS의 소프트웨어 코드에 공격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버드 법과대학의 교수이며 기술전문가인 Jonathan Zittrain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것은 MS가 그것의 독점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 할 수 있는 수많은 행위들을 약화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권고안을 제출한 주 검찰총장들은 “이러한 조치들은 Massachusetts 검찰 총장 Tom Reilly가 ‘수없이 많은 법률을 무용지물로 만든 자’라고 칭한 이 회사의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한 균형적이고 공정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Reilly는 “오늘 제출된 구제조치들은 경쟁을 막살하는 MS의 불법적인 시도행위들을 종결하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진실한 선택권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MS측은 “그 제안들은 극단적인 것이고 독점금지소송의 범위를 넘

어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연방법무부는 그 연방 합의안에 참가한 몇몇 주들과 같이 그 제안에 대한 일체의 언급을 거부했다.

그 제안은 개인용 컴퓨터 운영체제와 기타 응용프로그램 시장에 대한 MS의 공격을 원상태로 돌리고, 법원이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판단한 MS의 행위로부터 이익을 환수하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주들은 MS가 Windows의 기본적 기능만을 가진 버전을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그 문제에 접근했었다. Windows의 기본적 버전은 Internet browser, media player, instant messaging 및 그밖에 웹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으로서 MS의 새로운 운영체제, 즉 Windows XP의 핵심적인 특징들이 될 응용프로그램들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이 경우 컴퓨터 제조업자들, 다른 기업들, 정부기관들 그리고 운영체제의 많은 복사본에 대한 라이센스를 가진 다른 기관들은, 어느 응용프로그램을 자신의 운영체제에 포함시킬지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MS는 계속하여 관련 응용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한 제품을 더 높은 가격에 공

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주들은 역시 워드프로세서, spreadsheet 프로그램들을 포함하는 MS의 주도적인 사무용 응용프로그램들이 Apple과 Linux 시스템 등 많은 네트워크들을 가동시키고 있는 다른 경쟁 운영체제에서도 작동될 수 있도록 제작될 것을 제안했다.

이들 주들이 바라는 것처럼 Office 프로그램이 다른 운영체제와 호환 가능하게 만들어 진다면, 사용자들은 Windows 이외의 다른 운영체제를 선택하는데 더 많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Office는 MS에게 상당한 이익을 주는 주요 자원으로서 계속 폭넓게 유통 될 수 있을 것이다. "Apple platform과 Linux platforms이 Office에 호환성을 가진 소비자 플랫폼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다고 여겨지는 한, 소비자들이 반드시 MS의 Windows를 사용하여야 할 중요성은 더 적어 질 것이다"라고 Zitrain은 말했다.

이 제안에서는 또한 MS가 자사 운영체제의 브라우저 소프트웨어인 Internet Explorer의 기반을 구성하고 있는 소스코드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컴퓨터 사용의 많은 부분이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브라우저는 브라우저 자체에 탑재된 많은 응용프로그램과 함께 두 번째 운영체제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만일 개발자들이 이러한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있다면 그들은 그 브라우저와 같이 작동 될 수 있는 많은 새로운 응용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MS는 현재 이 개발공정부분을 통제하고 있다. 주들이 제안한 권고안은 MS

사에 대해 연방법무부의 합의안보다 더 엄격한 감독을 부과 할 것이고, 여기에는 10년 동안 그 합의 내용을 감시하기 위해 법원이 선임한 Special master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제안 권고안에 의하면 MS가 그 권고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자사의 다른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추가적으로 공개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또한 주들의 합의제안서에는 MS가 자사의 운영체제 안에 Sun Microsystems에 의해 개발된 Java라고 알려진 프로그램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Java는 많은 웹 응용프로그래밍들이 작동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MS는 자사 소유의 자체 버전을 가지고 있다.

연방 항소법원은 작년 6월 MS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다고 결정할 때 동 회사가 Java를 억제하기 위한 경쟁 제한 행위를 시도하였다고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방법무부는 합의안에서는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었다.

MS와 제휴를 맺은 사업자 단체는 이러한 Java와 Office에 관한 조항들을 MS의 경쟁자들에 대한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다. 합의 권고안은 AOL Time Warner, Sun, Oracle 그리고 Apple에 대한 선물목록으로 보이며, 그밖의 다른 방법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Americans for Technology Leadership의 이사인 Jim Prendergast는 말하고 있다.

반면 MS의 반대자들은 그 제안안을 칭찬하고 있다. "연방법무부의 합의안은 대부분 독점금지법을 회피하기 위해 MS가 작성한 것인 반면, 그 주들의 합의안은 독점금지법을 집행하기 위해 주

검찰총장들이 명확하게 초안을 작성한 것이다"라고 the Computer &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의 회장은 말했다.

이러한 합의 권고안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주들은 연방법관에게 그들이 제안한 구제조치가 연방법무부와 MS가 합의한 합의문에 있는 내용들 보다 더 우월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법원은 3월에 심리를 개시할 예정이다. 법원은 이와 독립적으로 연방법무부와 MS의 합의안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독립적으로 심사 할 것이다.

그 기업은 이미 다양한 응용프로그램들을 그 운영체제 안에 동일 코드로 통합시켰기 때문에, 주들의 제안 권고안 중 많은 부분은 Windows의 중대한 부분에 대한 재설계를 요구할 수 있다. 그 한 예로 MS와 기소자인 주 당국은 어디서 운영체제의 소스코드가 끝이 나고, 어디에서 브라우저가 시작하는지에 대해 의견 불일치를 보여 왔다. "무엇이 브라우저이고, 브라우저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라고 Zitrain은 말하고 있다. 하여간 그러한 통합 수준은 연방항소법원에 의해 반경쟁적인 것으로 언급되었다.

Tunney법에 따라 제출된 합의안이 동의판결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60일 간의 공고기간을 필요로 한다. 현재 연방법무부와 몇 개의 주가 합의하여 작년 11월 6일 법원에 제출한 합의안은 2002년 1월 28일로 공고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2001. 12. 8. Washington Post

MS의 공립학교 기부 계획안을 거부

연방법원은 1월 11일 재정부족에 시달리는 공공 학교의 학생들에게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기부함으로써 MS사에 대한 100 여개의 사적 반독점 소송을 종결할 것을 제안하는 합의 제한을 기각했다.

연방지방법원 법관 J. Frederick Motz는 “그러한 합의는 사적 독점금지소송을 통하여 얼마만큼의 손해배상액이 문제되는지에 대한 예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MS의 경쟁자들을 학교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러한 비통상적인 계획들을 보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Motz는 21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하여 최소 40억 달러를 기부하게 될 독립적인 법인인 eLearning Foundation은 결정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 합의안에 따라, Apple Macintoshes 혹은 다른 경쟁상품들 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혹은 무료로 PC와 소프트웨어가 제공된다면 학교 당국 혹은 학교 재단법인들은 소송보다는 개인용 컴퓨터와 MS의 소프트웨어를 선호할 수도 있을 것이다. Motz 법관은 그 제안된 합의안에 대하여 반대하면서 “무료소프트웨어의 제공은 법원이 약탈적 가격 책정 행위를 승인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1월 11일의 이 판결은 향후 5년 동안 1400여 개 학교의 7백만 이상의 미국 학생들에게 수십만 대의 중고 컴

퓨터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계획을 무효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비록 Motz는 만일 이러한 우려가 해결된다면 그가 새로운 합의안을 승인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고는 있지만, 일단 이 판결은 MS와 원고측 변호사들이 캘리포니아와 그 밖의 지역에서 진행될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준비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법원에 제출된 MS와 원고들의 합의안 성립을 도왔던 Cohen 지역의 Hausfeld & Toll의 파트너인 Dan Small은 “법원이 그러한 합의안을 인정하기 전에 그 재단에 더 많은 금액이 출원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MS가 그것을 받아 들일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그 견해에서 많은 특별한 제안들을 제시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더 이상의 협상이 있을지를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라고 MS의 대리인인 Tom Burt는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MS와 연방 집단소송을 제기 하였던 원고측 변호사들은 몇 달간의 협상 후에 이러한 계획안을 11월에 발표하였다. 그들은 재정이 풍족하지 못한 공립 학교에 대하여 10억 달러에 이르는 MS의 이러한 선물이 MS의 운영체제에 초과금액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는 6천 5백만에서 1억 명에 달하는 소비자들 각각에게 10달러 짜리 쿠폰을 나눠주는 것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었다.

청중으로 꽉 찬 Baltimore 법정에서 지난달 열린 3일간의 심리기간 동안 합의안에 찬성하는 의견들이 California와 그 외 몇몇 주에 소송을

제기했던 변호인들과 팽팽히 맞섰다. 이들 변호인들은 제출된 합의안은 그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소비자들의 부당한 대금 지급과 California에서만 30억에서 90억에 이를 수 있는 소규모 기업들의 손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들의 소송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California 소송은 8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소송을 준비중인 변호사들은 “우리는 손해배상금의 일부가 학교로 지금 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먼저 소비자들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소송사건들이 얼마만큼의 액수가 될는지에 대한 문제는 그 합의안을 거절한 Motz 판사의 결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MS에 대한 전문가들, 연방집단소송 전문 변호사들, 그리고 다른 주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다른 반대자들은 그 손해액의 금액 추정에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70억 5천만 달러에서 10억 6천만 달러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법원은 더 나은 해결책을 위한 모든 측면을 고려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의 하나는 초과지급된 금액의 거의 85%는 일반적인 소비자가 지급한 것이 아니고, 일반 기업들이 지급한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이 판결은 최소한 Apple Computer에 대해 단기적인 승리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Apple Computer는 법원이 그 합의안을 거절하거나 혹은 MS에게 자사의 Windows XP와 기타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대신, 전액 현금으로 기부할 것을 명령하도록

촉구해 왔었다. Apple Computer는 개인용 PC 시장의 5%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각 지역의 학교에서는 다른 분야 보다 더 강력하게 MS와 경쟁하고 있다.

작년 Motz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이 MS로부터 Windows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Apple을 구매한 경우 연방법상의 요건이 결격된다는 이유로 수십 개의 사적 독점금지소송을 각하 시킨바 있다. 현재 법원에 남아 있는 사건들은 제3자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자들에게 초과금액에 대한 배상을 인정한 주들에서 제기되었다.

사적소송들은 MS에 대한 횡기적인 정부차원의 독점금지소송과는 별도로 분리되어 진행되었다. 연방법무부와 9개 주 정부는 그 사건을 지난달 종결하기 위한 합의를 하였다. 9개의 나머지 주들과 Columbia 특별지구는 이 소프트웨어 거인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2002. 1. 12. Washington Post

사기적인 요금청구 회사, FTC의 기소에 합의하기로 동의

소비자들에게 사기적인 요금청구서를 보내거나 그들의 신용카드 계좌에 요금을 부과하여 소비자들이 주문하지 않거나, 승인하지 않은 오디오 서비스 혹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부과한 사업자들이 연방거래위원회에 그들의 연방법 위반혐의를 인정하고 연방거래위원회의 조치를 따르기로 합의하였다.

연방거래위원회는 합의안을 통해 피

고들이 장래에 사기적인 요금청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그들이 인터넷 웹상의 회원가입 요청에 e-mail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적절히 청구된 금액을 즉각적으로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그 밖에도 엄격한 기만행위 감시를 위한 이행사항들과 방지체제를 요구하고 있고, 피고들이 오디오 서비스 혹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요금청구와 수납을 받는 경우,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보증금은 사업자들이 그 합의안의 조항을 위반한 경우 몰수된다.

2000년 10월 연방거래위원회는 미국 플로리다 남부지역 연방지방법원에 Automated Transaction Corp. (ATC), World Telnet, Inc., WWW Provider Co., Edward Lipton 및 Donald Tetro 사가 불법적으로 소비자들이 요구하지도 않고, 인증하지도 않았으며 받지도 않은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청구하였음을 적시하며 기소장을 제출하였다. 청구서에서 연방거래위원회는 법원이 불법적인 행위를 막는 잠정적인 유지명령을 내리고, 피고인들의 자산을 동결하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영업을 갑독할 재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오늘 발표된 당사자의 최종 합의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최종판결문과 명령은 이들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이 합의안은 피고들이 소비자가 상품,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혹은 구매하기로 동의하였다는 내용에 대한 부실 표시, 혹은 소비자들이 주문하거나 인증하지 않은 상품 서비스에 대해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고 허위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였다. 이 합의안은 피고들이 소비자들에게 금액을 청구하기 전에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피고들의 웹사이트 중 어느 한 곳에서 신용카드를 가지고 서비스를 사용한 지 48시간 안에 구매자에게 e-mail을 보내 대금 청구방법과 가격 취소방법, 소비자가 이용하여 대금이 청구된 웹 사이트, 그리고 소비자의 지금 계좌에 표시될 상인의 이름을 안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합의안에서는 피고들이 제3의 채무수금기관들을 통한 서비스를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피고들의 엄격한 사기행위 탐지행위에 협조하며 금지 조치들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의 소비자에 대한 개인 신상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당국이 이와 같은 명령을 피고인들이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기록 유지 조항을 두고 있다.

ATC는 Delaware 기업으로 Florida의 Weston에 본사를 두고 있다. World Telnet은 역시 Weston에 본사를 두고 있고, WWW Provider Co.는 청산되었다.

위원회는 이 합의안을 승인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5-0의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승인하였고, 1월 24일 Florida 남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 승인을 받기 위해 송부하였다.

2002. 1. 31. 연방거래위원회

EU

유럽위원회, 합병규제제도의 개정에 관하여 광범위한 논의를 개시

유럽위원회는 금일, 유럽연합의 합병규제기능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하여 작성한 그린 페이퍼(Green Paper)를 채택하였다. EU경쟁정책의 기동중에 하나인 합병규제를 채택한지 11년이 경과하였는데, 유럽위원회는 특히 많은 경우 합병시 복수 회원국당국에 제출하지 않고 one-stop-shop 심사의 이익을 향수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어느 한 회원국에 중대성을 가지는 합병계획에 대하여 보다 간단한 신고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에 합병규칙이 대형합병 및 취득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유효한 수단이라는 것이 입증되었고, 이러한 합병 및 취득의 대다수는 통상 1개월 심사 후 승인되고, 관계기업에 3억 8천만명의 소비자를 포함하는 유럽시장으로의 자동적인 참여를 제공하고 있다. 보다 많은 합병이 one-stop 심사의 이익을 향수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검토하고 세계적으로 점차 확대되는 경제환경의 변화 및 확대되는 유럽연합을 고려한 규칙을 채택할 시기가 되었다」라고 마리오 몬테 경쟁정책 담당위원은 말했다.

합병규칙(이사회규칙 4064/89)은 1989년 12월에 채택, 1990년 9월에 시행되었고, 무수한 회원국규제제도에 있어 특정의 매출액기준을 초과하는

합병 및 취득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 집중은 다음의 경우에 one-stop show 심사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

- 당사자 대부분의 전세계 매출액의 합계가 50억 유로를 초과하고 당사자인 2사가 각각의 공동체내에서의 매출액이 2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당사자 각각이 공동체내 매출액 중의 2/3이상을 동일회원국내에서 얻고 있지 않을 것
- 이사회는 1997년, 보다 작은 규모의 계획에 대하여도 EEA내의 복수 회원국 당국에 신고를 제출하는 대신에 EU심사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기준을 도입하였다.

이번의 재검토는 위원회에 규칙 및 절차를 정기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다. 합병규칙은 1997년에 마지막으로 개정, 1998년 3월에 시행되었고, 회원국 경쟁당국으로의 「복수신고」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다 낮은 매출액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었다.

지난 11년 동안에 1,850건을 넘는 계획이 승인을 얻기 위해 위원회에 신고되었다. 압도적 다수가 조건 없이 승인되어졌고, 단지 18건(1%에도 미치지 못하는)만이 금지되었다.

규칙 4069/89의 재검토에 관한 그린 페이퍼는 이 법적수단의 기능에 관하여 폭넓은 논의를 시작, 과거 10년간 얻은 경험을 기초로 합병규제를 가능한한 개선토록 확인 받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난제에 대처하는 것

개정의 기본적인 목적은 세계적인 합병, 통화통합, 시장통합, 확대 및 기타의 관할에 따른 협력의 필요성에 의해 제기된 난제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최근 10년간 세계의 기업은 국제화(globalization)에 의해 또한 유럽에 있어서는 1993년의 단일시장의 개시, 1999년의 유로화 도입 및 진행중인 유럽연합의 확대에 의한 새로운 환경에 의해 야기된 난제에 대처하고자 합병활동을 현저히 증가시키고 있다.

동시에 합병규제를 하는 전세계 국가의 수가 극적으로 증대하고 복수 관할에 있어서 승인을 요구하는 합병 및 취득에 대하여 비용, 지연 및 법적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

그린 페이퍼는 관할, 실체면 및 절차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특정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제안을 행하고 있으나 기타의 분야에서는 단지 문제를 설정하고 의견을 구하고 있다.

이번 재검토에 있어서는 기타의 상세한 제안중에서도 특히 기업이 EU관할권내의 다수의 당국에 승인을 구하는 합병 신고를 줄이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합병규칙의 관할이 되는 기준을 간소화하기 위한 가능성 을 제기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한 사안을 가장 적절한 수준에서 취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위원회가 회원국당국에 합병안건을 회부할 경우 메카니즘의 간소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 국경을 초월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는 안건이 보다 용이하게 회원국에 회부되게 된다. 하나 이

일본

상의 회원국으로부터 위원회에 신고되는 경우에 관해서는 동일한 제안이 행해지고 있다.

그린 페이퍼는 또한 합병을 행하려는 기업에 의한 문제해소조치의 제안에 의한 장점이 위원회, 회원국의 전문가 및 제안된 계획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관계자에 의해 충분하고 적절하게 고려된 기회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안을 하고 있다.

몇 개의 제안은 EU합병심사절차를 특징 지우는 엄격한 타임 스케줄을 고려하고 유지하기 위해 고안되어졌다.

그린 페이퍼는 또한 합병규칙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쟁기준의 장점, 즉 시장지배적지위를 형성 또는 강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계획은 승인되어 질 수 없다는 것에 관해 광범위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하여 이번 기회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이 기준은 유효성을 기타의 많은 관할권에 있어서 이용하고 있는 기준과 어떻게 비교하는 가에 관한 논의를 구하고 있다. 더욱 더 많은 대형합병이면서 국경을 초월하는 계획을 심사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주요한 관할당국은 가능한 수렴된 접근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이러한 논의는 현재 특히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위원회는 자문기간내에 받은 코멘트에 기초하여 2002년내에 합병규칙의 개정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관련자는 2002년 3월 31일까지 유럽위원회의 Task Force에 코멘트를 제출할 수 있다.

2001. 12. 11. 유럽위원회 발표

동경도 신도시건설공사 토목공사 입찰참가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일본 공취위는 동경도 구역 중 구부와 도서부를 제외한 30개 시정촌(市町村) 구역에서 사업활동중인 광역 종합건설업자 34개가 다마지구에서 영업소를 두고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타 광역종합건설업자의 협력을 얻어 신도시 건설공사 발주의 특정토목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신도시건설공사 발주의 특정 토목공사의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했다는(독점금지법 제3조 위반) 사실을 인정하여 2001년 12월 14일 상기 34사에 동법 제4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과징금액은 6억 9012만엔이고 납부기한은 2002년 2월 15일까지이다.

2001. 12. 14.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의료용 엑스선 필름 판매사업자에 경고처분

일본 공취위는 의료용 엑스선 필름 판매업자에 대하여 독점금지법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상기 필름 판매업자 4개사가 1999년 9월부터 사단법인 일본화상 의료시스템 공업협회 기획조사부회 필름위원회의 회의장 또는 확대 필름위원회의 회의장에서 2000년도 특정보험 의료재료가격(이하 '재료

가격'이라 함)의 개정에 관한 정보교환 등을 함으로써 2000년 4월 1일 이후의 보험의료기관에 대한 판매가격에 대하여 공동으로 ① 현행판매가격의 유지, ② 하락율이 큰 저가판매선에 대한 판매가격의 인상을 실시하고 있다는 혐의가 인정되어 2001년 12월 21일 상기 4사에 대하여 동 법 제2조(부당한 거래제한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어 금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고처분을 했다.

2001. 12. 21.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동일본 전신전화 및 서일본 전신전화 회사에 대한 경고처분

일본 공취위는 동일본 전신전화회사(주)와 서일본 전신전화회사(주)에 대하여 독점금지법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 양사가 2000년 12월 26일부터 ADSL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① 전화착신에 의한 ADSL 접속이 절단될 우려가 있는 보안기기의 대체 공사에 있어, ② 광화이바케이블에 대한 메탈케이블의 수용 대체공사에 있어 각각 수용가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자사의 수용가와 관계되는 경우에는 무료로 대체 또는 수용대체를 하여 주고 있는데도 경쟁사업자의 수용가와 관계되는 경우에는 유료로 하고 있다는 행위가 인정되어 2001년 12월 25일 양사에 대하여 동 법 제19조(불공정한 거래방법 제9항(부당한 고객유인) 또는 제15항(거래방해)에 해당)에 위반될 우려가 있어 금후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고처분 했다.

2001. 12. 25.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독일

연방카르텔청, 루프트한자의 약탈적 가격책정에 경고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예비심사를 통하여 독일 항공사인 루프트한자 주식회사가 프랑크푸르트에서 베를린까지의 노선에서 경쟁 항공사인 게르마니아 유한회사를 배제하기 위한 항공료를 설정함으로써 경쟁사를 이 시장에서 배제시키려고 한다고 판단했다. 경쟁당국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는 이러한 행위를 즉시 금지하도록 명령했다.

게르마니아 항공사는 2001년 11월 12일부터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베를린 타겔 공항간의 재예약이 가능한 편도 항공료를 99유로에 제공해왔다. 이 요금은 루프트한자가 비즈니스맨을 위한 비즈니스석 및 이코노미석의 요금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루프트한자 측은 재예약이 가능한 이코노미석의 왕복 요금(별도 예약가능)을 200유로에 내놓았다. 즉 편도여행에 100유로의 비용이 드는 셈인 것이다 (세금 포함). 이는 예전에 루프트한자에서 제공한 요금에 비하면 배타적인 요금이다. 자세히 말하자면, 예전에는 이코노미석 편도요금이 254유로 또는 242.50유로였다(세금포함). 즉 60% 이상 가격을 할인한 것이다. 루프트한자 측에서 요금을 100유로로 할인하자, 이에 대응하여 게르마니아 항공사에서는 이 노선의 항공료를 99유로에 서 55유로로 할인했다. 그러나 게르마-

니아 항공사는 경제상의 이유로 2002년 들어 요금을 다시 종전의 99유로로 올렸다.

연방카르텔청장인 Böge는 “프랑크푸르트-베를린 노선에서 가장 독점적인 지위에 있는 루프트한자의 이러한 행위는 루프트한자가 약탈적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경쟁사인 게르마니아 항공사가 객관적으로 정당한 상황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경쟁자를 부당하게 방해하기 위하여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루프트한자는 게르마니아 항공사가 경쟁사로서 활동해오지 못했던 국내 노선에서는 비즈니스맨을 위한 항공료를 할인해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방카르텔청의 이번 심사로 인해, 루프트한자는 더 이상 손실을 보면서 할인을 하는 전략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100유로의 가격에 편도항공편을 제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루프트한자 측은 이 가격에 제공했던 탑승서비스나 보너스 마일리지 서비스는 계속 해서 제공하고 있다. 높은 비용과 추가 서비스를 고려하면, 루프트한자가 추구했던 손실전략은 객관적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루프트한자는 이 노선에서 지배적 지위에 있고, 게르마니아 항공사보다 더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신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경쟁사인 게르마니아 항공사를 이 노선으로부터 배제하고 더 나아가 국내노선에서 경쟁자를 배제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연방카르텔청장은 “만일 루프트한자가 비용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기타 다른 전략을 이용하여 경쟁자를

배제하려 했다는 혐의가 최종적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연방카르텔청의 입장에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시장경제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2002. 1. 22. 독일 연방카르텔청 발표

중국

차이나텔레콤 분할결정 이후 통신시장의 동향

중국 정부는 지난 2001년 10월 중국 최대 통신업체인 차이나텔레콤을 2개의 회사로 분할키로 결정했었다. 이 결정은 중국의 통신산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차이나텔레콤의 60~7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기업공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동안 차이나텔레콤은 60억~7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기업공개를 시도했으나 규모가 너무 커 기업공개가 계속 연기돼 왔었다.

이에 따라 차이나텔레콤은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남중국텔레콤(China Telecom South)과 북중국텔레콤(China Telecom North)으로 분리된다. 북중국텔레콤은 양자강 북부의 10개 지역을 서비스지역으로 삼고 있는데, 이 지역의 인구는 약 4억 3천만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남국텔레콤은 양자강 남서부의 21개 지역이 서비스 지역이며, 지역내 인구는 8억 3천만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정은 주룽지 총리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무원 소속 국가 통신위원회가 6개월간에 걸친 숙고 끝에 내린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중국내 통신산업에 있어서 많은 영향과 파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한편 중국의 이동통신 부문은 이미 차이나모바일과 차이나유니콤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 상황에서 유선통신 마저 두 회사로 분리된다면 중국의 통신산업은 유선과 무선분야가 각각 복절 체제로 급속하게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차이나텔레콤을 분할키로 하는 결정을 발표한 후, 차이나텔레콤이 신규 투자계획을 전면 축소 또는 연기함에 따라 중국 통신시장을 겨냥한 외국 통신장비 및 솔루션 업체들의 마케팅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차이나텔레콤이 투자를 줄이면서 전반적인 중국내 통신시장 환경이 바뀌면서 중국에 진출하려던 외국 통신장비 업체들이 예상 매출액을 줄이거나 마케팅 전략을 대폭 수정하고 있다고 한다. 가령 고정선 통신장비 판매비중이 높은 루슨트테크놀로지스, 노텔네트웍스, 시스코시스템스 등은 차이나텔레콤과 맺었던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자 최근 마케팅 전략을 바꾸고, 마케팅 중심을 차이나텔레콤에서 차이나유니콤이 발주하는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장비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또 시스템통합(SI) 업체인 아시아인포홀딩스는 지난 해 차이나텔레콤과 맺은 계약 이행이 한동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올해 예상

매출을 대폭 수정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자사의 올해 국내 통신용 소프트웨어 매출이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AT&T차이나의 아트 코블러 사장은 "중국 정부가 통신분야에 경쟁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는 이해하지만 치밀한 준비작업이 없이 차이나텔레콤의 분할을 결정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차이나텔레콤의 고위 임원진들이 불투명한 장래에 불안을 느껴 신규 투자 계획을 전면 중단했다"고 말했다.

통신 컨설팅업체인 레흐만브라더스 관계자는 "앞으로 차이나텔레콤의 분할 작업이 끝날 때까지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차이나텔레콤이 당초 120억 달러로 책정했던 올해 투자규모를 최근 90억 달러 까지 축소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중국의 고정선 통신분야 투자가 지난해보다 8%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나뉘어지는 차이나텔레콤의 분할은 서비스나 기능을 중심으로 한 분할에 비해 경쟁촉진 효과가 훨씬 적을 것으로 가트너보고서는 예상했다. 지역적 분할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사업자 선택권을 준 것은 아니어서 지역내의 독점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NTT를 지역에 따라 동서로 분할했으나 NTT는 여전히 일본의 유선 전화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장비업체에게는 차이나텔레콤의 분할이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록 지역내에서는 독점상태가 상존하지만 분할된

새로운 두 사업자는 한동안 체제구축을 위해 설비투자를 많이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있다. 유럽이나 미국의 경험을 볼 때, 구조조정에 따른 사업축소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내 통신사업이나 관련 서비스 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4개의 거대사업자가 시장이나 투자를 대부분 점유하게 되어 신규 진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거대시장이나 현재의 낮은 서비스 가입률을 고려할 때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이 예상되며 단기적으로는 통신시설 기반구축을 위한 틈새시장이나 기존 기반시설을 이용한 재판매시장에서의 진입이 예상된다.

2001. 10. 17, 2002. 2. 5.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타임스, 전자신문